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9일

나. 발 의 자: 임헌호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헌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의 근거를 「지방공무원법」으로 명시함(안 제4조 제1항)

○ 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 신설(안 제4조 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# 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영등포구 민족통일협회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(지원사업 등)는 민족통일협회에서 추진하는 통일교육, 홍보 및 구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,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
- 안 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는 민족통일협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민족통일협회는 1981년 설립된 국내 최대규모의 전국 조직을 갖춘 민간통일 운동단체로서,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민족통일협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임헌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.

발 의 자: 임헌호·우경란·양송이  
이규선 의원(4인)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 
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)
- 라.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)

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10. ~ 11. 14.)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족통일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란 민족역량 강화,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(동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 등)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통일교육, 홍보 및 구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
2.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
3.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교부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
3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, 지원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